

#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

2023. 7. 28  
조례 제1099호

제1조(「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만 18세부터 만”을 “18세부터”로 한다.

제2조(「증평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19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증평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증평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증평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증평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5세”를 “15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증평균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증평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증평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

제2조제3호 중 “만 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각각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11조(「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12조(「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13조(「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2호의 비고란 중 “보훈처발행 증명서”를 “국가보훈부 발행 증명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